

2026년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추가 모집공고

사업장의 환경시설 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「2026년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」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3. 5.

안 산 시 장

1. 사업개요

가. 사 업 명 : 2026년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

나. 사업기간 : 2026. 3. ~ 12.

다. 사업예산 : 금68,900천원

라. 사 업 량 : 13개소

마. 지원대상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3~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
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※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방지시설 제외

바. 지원내용 : 금5,300천원/개소 ※ 별도 자부담 있음

(지원사업 1) 관리지원 및 성능확인 : 금1,700천원/개소(도 30%, 시 70%)

(지원사업 2) 유지보수 : 금3,600천원/개소(도 30%, 시 50% ※ 자부담 20% 별도)

사. 준수사항 : 사업 이행각서 작성, 유지보수에 따른 자부담 20% 별도

- 중도 포기 시 보조금 환수 및 차년도 사업참여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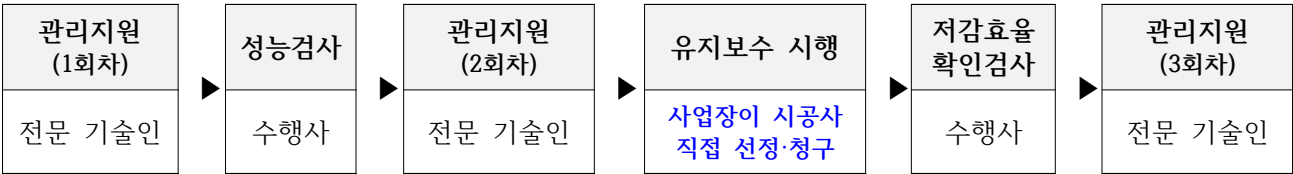
아. 추진방법 : 대행 기관(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) 추진(☎ 031-985-0304)

2. 신청개요

- 가. 신청기간 : 2026. 3. 5.(목) ~ 예산 소진 시까지
- 나.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gmlgus0102@korea.kr)
- 다. 선정방법 : 접수 순서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대상자 우선 선정
- 라. 신청서류
 - 사업 참여 신청서(붙임 1) 1부.
 - 이행각서(붙임 2) 1부.
 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(붙임3) 1부.
 -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(사용인감 사용 시) 각 1부.
 -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각 1부.
 -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부 1부.
 - 대기배출시설 설치(허가)신고 증명서(사본) 1부.
 -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.
- 마. 문 의 처 :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 (☎ 031-481-2904)

3. 지원 세부내용

○ 사업 추진 절차



※ ‘성능검사 > 유지보수 > 저감효율 확인 검사’ 순서로 진행, 관리지원(연 3회)은 사업장별 특성에 맞춰 횟수와 시기 탄력적 운영

○ 지원내용

구 분	소요비용	보조 비율	주요내용
[지원사업1] 관리지원 및 성능확인	1,700천원×20개소 (100%지원)	도 30% 시 70%	1) 관리지원 : 600천원 한도(1회당 200천원, 3회) o 환경분야 전문 기술인력 파견을 통한 방지시설 관리지원 및 컨설팅(3회) ※ 사업장 특성에 맞게 탄력적 운영 -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(송풍기, 덕트 등) 관리 -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방지시설 관리 매뉴얼 제공(1회)

			2) 성능검사 : 500천원 한도(1회) ○ 방지시설 본체·후드·덕트·송풍기 등의 유속, 유량, 가스 유출 여부 등을 장비를 통한 성능검사(1회) - 사업장별 성능검사 보고서 제공
			3) 저감효율 확인 검사 : 600천원 한도(1회) ○ 방지시설 처리효율 확인을 위한 오염물질 검사(1회) - 사업장별 배출 오염물질 검사 및 성적서 제공 - 먼지, Sox, Nox 등 사업장 운영현황 고려하여 측정항목 선정
[지원사업2] 유지보수	4,500천원×20개소 (80% 지원, 3,600천원 20% 자부담, 900천원)	도 30% 시 50% 자부담 20%	4) 유지보수 : 유지보수비의 80%(3,600천원 한도) ○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- 관리지원 및 성능검사 등으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내용을 선정 * 예시1) 전문가의견 : 활성탄 교체/사업장 신청:안전사다리 교체 → 지원불가 * 예시2) 전문가의견 : 활성탄 교체/사업장 신청:활성탄, 안전사다리 교체 → 지원가능 - 참여 사업장이 시공사를 직접 선정하여 금액 청구

< [지원사업 2]유지보수 지원 항목 및 지원범위 >

- 유지보수는 아래 각 호의 항목에 대해 지원할 수 있으며, **제1호**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크고 지속성이 있는 유지보수 항목으로, 상대적으로 사업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원 및 성능검사를 통해 필요성이 확인되면 우선 지원할 수 있음

1. 국소배기장치(후드·덕트·송풍기 등), 부대설비(배관·펌프·벨트 등), 방지시설 교체(수리)비

2. 방지시설 소모품(활성탄, 여과포, 충전물 등) 교체(청소)비 ※ 방지시설 청소비 포함
3. 안전 작업환경 개선(안전난간 및 노후사다리 교체 등)
4. 아름다운 산단 미관 조성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본체 도장(페인팅)비
5. 「대기환경보전법」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수리비
(단, 가동개시일 또는 그린링크 전송확인일 기준으로 36개월 이내에 설치한 경우 제외)

- 단, **제1호**(국소배기장치, 부대설비, 방지시설 교체(수리)비)에 대해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앞선 '관리지원 및 성능검사'를 통해 **도출된 결과와 관계없이 우선지원 가능.**

4. 유의사항

- 가. 본 사업은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 나. 중도 포기에 따른 불이익,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자기부담비율(20%)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만 사업신청 가능
- 다.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,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- 라.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누락 등으로

신청자격이 미충족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마.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모든 업무는 대행기관(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)에서 추진하며, 대행기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바.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선정 된 사업장 정보는 대행 기관에 제공되며,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- 붙임**
- 1. 유지관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.
 - 2. 이행각서 1부.
 -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 1부. 끝.

【붙임 1】 보조사업 참여 신청서

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

신 청 자	상 호 명 (사업자번호)				성명(담당자)				
	사업장 전화번호				H.P(담당자)				
	사업장 업종				이메일(담당자)				
	사업장 주소								
시설 현황	업 종		대기허가(신고)증 상 업종 기재			대기 중수 (3~5 종)			
	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 현황 (허가증 사본 첨부 必)								
	배출시설					방지시설			
	배출시설명	대기오염 물질 종류	용량	수량	발생량 (톤/일)	방지시설명	용량	수량	
애로사항									
방지·배출시설 운영 관련 애로사항, 유지보수 받길 희망하는 사항 등 자유롭게 작성 (제출시 파랑 부분은 삭제하여 제출)									
위와 같이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.									
안산시장이 귀하							20 년 월 일	신청자 (인)	
■ 구비서류 1. 이행각서(붙임 2) 1부. 2.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위탁 · 제공 동의서(붙임 3) 1부. 3. 인감증명서(법인인 경우, 법인인감증명서) 1부. 4. 사용인감계(해당될 경우, 미제출시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사용함으로 간주) 1부. 5.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1부. 6. (가장 최근)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1부. 7. 대기설치(허가)신고 증명서(시설 내역, 오염물질 발생량, 공정도 등 포함) 1부. 8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. ※ 모든 서류 날인시, 인감 도장(또는 사용인감) 사용.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									

이행각서

사업장명	(☎ :)
주 소	

상기 본인은 「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」에 신청하며,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가. 수혜 사업장으로 선정될 경우, 중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성실히 참여 한다.
- 나. 사업 중도 포기할 경우 차년도의 해당사업 참여 제한 및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을 감수 한다.
- 다. 본 사업은 관리지원, 성능검사, 저감효율 검사와 유지보수 단계로 구성되며,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기부담금(20%)은 사전에 확인한 바, 해당 자기부담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.

아울러, 다음 각 호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 내용이 취소(반환)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, 특히, 1~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을 받을 것을 확인합니다.

- 제1호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
- 제2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
- 제3호 유지보수 신청서(승인 받은 경우)의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한 경우
- 제4호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,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
20 년 월 일

대 표 자

(인감도장)

안산시장 귀하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위탁 · 제공 동의서

「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」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.

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,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 선정,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[필수]

[수집 ·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]

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신상사항, 사업장정보 등)

[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]

·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, 보조금 집행·관리 등에 이용

[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,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□ 동의함

☐ 동의하지 않음

2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[필수]

[위탁 ·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]

· 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신상사항, 사업장정보 등)

[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]

· (제공) 광역·기초지자체장, 업무대행 기관

[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]

(경기도, 시·군)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·관리 등에 이용

[개인정보를 위탁·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·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☐ 동의함

☐ 동의하지 않음

본인은 본 “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” 내용을 읽고
명확히 이해하였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성명 : (인)

안산시장 귀하